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0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0.

발 의 자:서영교・박지원・이해식

이용우 • 박홍배 • 박홍근

이정헌 · 강유정 · 박희승

한정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 원 및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음.

그러나, 최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양병원 간병수요는 연간 15만명 이상으로,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, 정부도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.

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'병원급 의료기관'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·시설·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4조의2).

법률 제 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2항 중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"을 "병원급 의료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의2(간호·간병통합서비스	제4조의2(간호・간병통합서비스		
제공 등) ① (생 략)	제공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	② <u>병원급 의료기관</u>		
<u>병원급 의료기관</u> 은 간호·간병			
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			
록 노력하여야 한다.			
③ 제2항에 따라 간호·간병통	③		
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			
의료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간			
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"			
이라 한다)은 보건복지부령으			
로 정하는 인력, 시설, 운영 등			
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	<u>o</u>]		
<후단 신설>	경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		
	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		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		